

##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제 37 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 및 동 복지위원회운영에 관한조례(안)		
제안(출)자	서 초 구 청 장	제안(출)년월일	1995. 12. 29.
검토 위원명	전문위원 임 총 빙 <i>임총빙</i>		

### 1. 검토내용

- 사회복지사업법령에의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동(洞) 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제정안임.

### 2. 검토결과

- 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사회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복지위원 운영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함.

### 나. 검토의견

제 정 안	검 토 의 견	비 고
<p>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된다.</p> <p>③아래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1. 사회복지과장 2. 가정복지과장 3. 기획예산과장</p> <p>④위촉직 위원은 아래 각호의 자 종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3조(구성)①(제정안과 같음)</p> <p>②(제정안과 같음)</p> <p>③(제정안과 같음)</p> <p>④ -----위촉-----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p>	임명 →위촉

제출안	검토의견	비고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연임 할 수 있으며 ②③을 ②로 하고 내용은 제정안과 같음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③-----개의----- -----	개최 →개의
제15조(의무)①복지위원회는 그 직무를 행할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복지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동장을 자체없이 구청장에게 해당복지위원회의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복지위원회의 해촉을 요구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③제2항----- -----	②→2
제19조(활동실적 관리)①복지위원회는 본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활동을 한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복지위원회는 매분기 활동실적을 분기말 기준 의월 10일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②항에 의한 활동실적 보고서에는 상담일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조 (활동실적관리)①-----제11조의----- ②(제정안과 같음) ③제2항-----	(삭제) 본조례 ②→2

## 다. 참고사항

◦ 96예산 :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수당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50,000\text{원} \times 6\text{명} \times 4\text{회} = 1,200,000\text{원}$$

### 3. 관련법규

#### 가. 사회복지사업법 ('92. 12. 8 전문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에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생활보호법
- 2. 아동복지법
- 3. 노인복지법
- 4. 장애인복지법
- 5. 모자복지법
- 6. 영유아보육법
- 7. 윤락행위등방지법

제5조 (사회복지위원회)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및 시·군·구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복지위원) ①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복지위원을 둔다.

②복지위원은 그 관할지역안의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여자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③복지위원과 사회복지관계법령에 의하여 둔 사회복지관계요원 및 관계행정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복지위원의자격·직무·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94. 3. 2 개정)

제2조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3. 6. 6)

1.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의 수립
2. 사회복지사업 상호간의 조정
3.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 시행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의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심의관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종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대표자

④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②부의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위원의 수당) ①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복지위원)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구·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개정 93. 6. 9)

1. 당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 (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3. 6. 9)

④복지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90. 12. 1, 93. 6. 9)

1. 관할지역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여자등 법 제 2조 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한 보호의 의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알선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 관계단체와의 협력

4.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⑤복지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거나 정치활동 기타 직무와 관련없는 활동을 하는 때에는 즉시 당해 복지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93. 6. 9)